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50275, 2021나5028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피항소인 A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스

담당변호사 양동수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8. 26.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250545, 2020가단
20386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8677분의 66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에 관하여 2018.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8. 3. 5. 접수 제3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①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8677분의 66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참가인과 C 사이에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7. 9. 21. 접수 제17597호로 마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8677분의 66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1650분의 608지분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66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2018. 3. 1.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아래 4. 다. 1)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내용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1986. 6. 7. G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10. 2.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2009. 10. 6. 이혼신고를 하였고, G과의 이혼과정에서 2007년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4. 7. 18. C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18. 11. 19.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참가인과 G 사이에는 자녀로 피고 및 D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13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6. 7. 5. 접수 제13990호로 2006.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18691호로 2007.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같은 등기소 2018. 3. 5. 접수 제3786호로 2018.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53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20681호로 2006.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07. 9. 21. 접수 제17597호로 2007.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같은 등기소 2018. 3. 5. 접수 제3786호로 2018.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C은 2018. 3. 1.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청구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과 C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53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은 참가인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지분의 13지분은 참가인이 D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H로부터 D 명의로 매수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이후 참가인과 C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에 기하여 마쳐진 C 명의의 지분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C이 참가인의 자녀 중 한명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것인바,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당초부터 참가인의 소유로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소유관계 및 C,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 병 제2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53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을 매수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C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13지분을 D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다시 C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이다. C은 참가인과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참가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의 자녀인 피고 앞으로 그 등기를 이전해준 것인바, 이는 참가인이 다시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을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참가인은 2006. 6. 26.경 H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13지분을 그 자녀인 D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 명의로 매수하고, 2007. 7.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참가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06. 9. 30.경 H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53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을 매수하여, 2006. 10. 13.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참가인은 전 남편인 G의 사업상 채무를 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2007. 9. 2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53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에 관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13지분에 관하여도 2007. 10. 12.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참가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2011. 6. 15.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채14733호로 참가인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1.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1. 8. 31.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3663호, 2011하면36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3. 30. 파산선고를, 2012. 10. 19.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2007. 1. 1.부터 2007. 8. 30.까지 참가인의 신용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I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연체이력을 해제일로부터 최장 5년간 활용하므로, 연체이력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J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참가인의 개인대출정보가 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J에 의하면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고, 위 조회는 기준일자(기간)에 발생, 해제, 삭제된 변동내역만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위 기준일자(기간)에 변동내역이 없는 경우는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각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만으로 참가인에게 2007년경 당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C은 참가인과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명의를 다시 참가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2018. 3. 5.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당시 만 24세였던 참가인의 자녀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1. 19. 피고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 또는 D에서 참가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C으로, C에서 다시 참가인의 자녀인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C은 2018. 3. 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외에도 강원도 횡성군 L의 1321분의 337지분1)

과

진주시 M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진주시 M 외에는 모두 참가인 또는 D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다가 2018. 3. 5. 다시 피고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고, 진주시 M에 관하여만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9.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N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C은 2018. 3. 1.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가 자금난에 처해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C이 진주시 M과는 달리 위 각 부동산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그 교환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일절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을 자신의 친자녀도 아닌 피고에게 이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및 강원도 횡성군 L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관리증을 보관하는 등 위 각 부동산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인 C 혹은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그 등기를 이전해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C이 참가인 또는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 등록세, 인지대, 법무사수수료 등을 납부하였고,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제세공과금도 납부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참가인과 2007년경부터 사실혼 상태에서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참가인은 C과 동거를 시작한 후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에서 종종 근무한 것 이외는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C이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2자 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제2항에 의하면 2자 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변동도 무효이며,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물건변동이 무효가 아니고,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등 참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53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에 관하여 참가인이 2007. 9. 21. 사실혼 배우자였던 C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2자 간 명의신탁으로서 참가인과 C이 비록 그 후 2014. 7. 18.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당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각 부동산 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무효로 볼 것이다. 이후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8. 3. 5.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참가인과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 각 부동산 지분을 참가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참가인의 자녀인 피고 앞으로 그 등기를 이전해주게 된 것인바, 이는 참가인이 다시 피고에게 2자 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참가인과 그 자녀인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53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은 참가인의 소유이다(설령 참가인에게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특례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참가인과 C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쳐진 2014. 7. 18.경 무렵에는 유효하게 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참가인이 C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2018. 3. 5.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 다르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13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그 자녀인 D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6. 7.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도인인 H가 참가인과 D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D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13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볼 것이다.

나.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C의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 C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아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참가인에게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참가인과 C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쳐진 2014. 7. 18.경 무렵부터는 유효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결론에 있어서 다르지 아니하다].

다.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 C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8. 3.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의 청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C 명의의 등기가 참가인과 C 사이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한 쪽 청구가 인정되면 다른 한 쪽 청구는 인정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53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은 참가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13지분은 D 소유인바,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77분의 53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50분의 608지분의 소유자인 참가인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진, 판사 고종영, 판사 장성훈

별지

목 록

1. 강원도 횡성군 E 임야 8677㎡
2. 강원도 횡성군 F 임야 1650㎡, 끝.

1) 위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8677분의 13지분과 동일하게 H로부터 춘천지방법원 황성등기소 2006. 7. 5. 접수 제13990호로 2006. 6. 26.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같은 등기소 2007. 9. 21. 접수 제17596호로 2007.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18. 3. 5. 접수 제3787호로 2018.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